

KBS AI 가이드라인

미디어연구소 2025.8.18. 제정

인공지능(AI) 기술은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의 품질은 물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보조수단이다. 방송 기술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KBS는 인공지능 기술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힘쓰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적·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KBS는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은 KBS가 제공하는 모든 대국민 서비스와 콘텐츠, 그리고 이를 제작·운영하는데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에서 ‘인공지능(AI)’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한 기술을 말하며, 기계 학습, 자연어 처리, 콘텐츠 생성 도구 등을 포함한다.

제1조 (인간 중심) 인공지능(AI) 활용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뤄져야 한다.

- ① 인공지능을 활용한 KBS의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은 인간의 창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 ②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활용 시 그 설계, 개발, 운영 및 결과물 생성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인간 감독과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조 (공영성) 인공지능 활용은 공영방송 KBS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 ①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은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 KBS가 정한 내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은 편향성을 내재할 위험성이 있음에 주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가치와 이해관계를 고르게 반영하고, 정치적·종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④ 뉴스 및 시사 콘텐츠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공정성과 정확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3조 (책임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수반됨을 유념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와 콘텐츠는 해당 책임자의 최종 확인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즉각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그 사실을 알려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④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제4조 (사실 확인과 검증)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에는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인공지능은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부정확한 정보나 허구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 확인과 검증에 노력한다.

③ 제삼자로부터 획득했거나 제삼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인공지능이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의한다.

④ 뉴스 및 시사 콘텐츠의 경우에는 취재와 기사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콘텐츠의 방향이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을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투명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이를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①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실의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에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된 경우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시 그 출처도 표시해야 한다.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또는 콘텐츠 생산자는 그 활용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권익 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KBS 및 타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인공지능 활용 시 ‘KBS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범위를 초과해서 활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유출 및 AI학습 데이터로의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한다.

④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한 콘텐츠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나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초상·음성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존중해야 한다.

① 대국민 서비스 또는 콘텐츠 생산을 위해 타인의 초상, 음성 등을 인공지능에 사용할 경우, 해당 타인의 초상권과 음성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타인의 초상이나 음성 등을 인공지능에 활용한 결과물이 해당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8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콘텐츠 생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시정한다.

② KBS가 보유한 콘텐츠가 타인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되지 않도록 워터마크, 저작권 방어기술 도입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